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795 |
|----------|-----|

2024. 12. 11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8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동우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및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함 (안 제3조)
 - (현행)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→ (개정)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
- 지원내용에 냉·난방비, 양곡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,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을 신설함. (안 제6조)
-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빠른 고령화로 인해 충청북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, 이에 따라 노인복지 확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.
- 충청북도에는 4,40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음.
 - 경로당은 주거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¹⁸⁾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, 마을 어르신들의 상호교류는 물론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.
- 즉,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여가복지시설로, 기능보강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지원 및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임.

18)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2. **경로당**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¹⁹⁾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변경한 것임.
 - (현행)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→(개정)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
- 안 제6조제1호는, 지원 내용 중 경로당 운영비에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를 포함한 것임.
 - 이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의²⁰⁾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안 제6조제6호는, 지원 내용에 ‘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’을 신설한 것임.
 - 이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²¹⁾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²²⁾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
 -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후 경로당의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- 다만 사업 추진 시, 기능보강 대상 경로당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.

19) 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)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21) 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22) 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
- 현행 제14조(시행규칙)은,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²³⁾에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.
-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,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(사업의 위탁)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지원 및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3)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”을 “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
증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에 정한”을 “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”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
중 “사업비”를 각각 “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
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
(중전의 제7호) 중 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1. 경로당 운영비(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포함) 지원 사업

6.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장 지원 사업

제8조의 제목“(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)”을“(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
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경로당활성화”를 “경로당 활성화”로 한다.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
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「충청북도 사무의
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관련
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노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<u>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된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.</u> | 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</u> ----- ----- -----. |
| 제6조(지원내용)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<u>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1. <u>경로당 운영비</u> 2. <u>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</u> 3. <u>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</u> 4. <u>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활동 관련 사업비</u> 5. <u>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비</u> <u><신 설></u> 6. (생략) 7.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사업에 소요되는 비용</u> | 제6조(지원내용) ----- ----- <u>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</u> ----- -----. 1. <u>경로당 운영비(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포함) 지원 사업</u> 2. ----- <u>사업</u> 3. ----- ----- <u>사업</u> 4. ----- ----- <u>사업</u> 5. ----- ----- <u>사업</u> 6. <u>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8. ----- <u>사업</u> |
| 제8조(<u>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</u>) | 제8조(<u>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</u>) |

| | |
|--|---|
| <p>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경로당활성화</u>에 관한 사항</p> | <p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경로당 활성화</u>----- -----</p> |
| <p><u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| <p><u>제14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|

관계법령

□ 노인복지법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6.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,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도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경로당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
-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내용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도내 경로당의 냉난방비(양곡비) 구입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'25년 예산 가내시 산출기초 반영, 지원대상 수는 5년간 연평균 증가 수를 적용하여 산출

| 구분 | 단 가(천원) | | 산출내역(2025년 가내시 기준)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사업비 | 개소당 | 개월당 (천원) | 지급횟수 | 경로당수 | 집행계수 |
| 냉방비 | 1,293,000 | 330 | 월 165 | × 2개월(하절기: 7~8월) | × 4,404개소 | × 88.9% |
| 난방비 | 7,837,000 | 2,000 | 월 400 | × 5개월(동절기: 1-3 / 11-12월) | × 4,404개소 | × 88.9% |
| 양곡비 | 2,444,000 | 628 | 약 52 | × 12포대(20kg) | × 4,402개소 | × 88.9% |

※ 산정기준: 2025년 경로당 관련 사업 예산가내시(노인복지과-4311, '24. 9. 13.)

※ 경로당 냉난방비(양곡비)지원대상

(20)4,204개소 (21)4,213개소 (22)4,237개소 (23)4,265개소 (24)4,276개소 (25)4,404개소

평균 연간 40개소 증가 ⇒ (26)4,444개소, (27)4,484개소, (28)4,524개소, (29)4,564개소

-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은 기추진 중인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5개년 평균 예산액으로 산출

나. 추계 결과

- 냉·난방 및·양곡비: ('25년)11,574,000, ('26년)11,673,516, ('27년)11,771,550,
('28년)11,869,404, ('29년)11,967,172천원
- 경로당 기능보강: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5년(2020~2024년) 평균
예산액 869,900천원 적용
- ※ ('20)907,800천원, ('21)1,230,000천원, ('22)827,700천원, ('23)751,500천원, ('24)632,5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냉·난방 및 양곡비: 국비(50%), 도비(15%), 시군비(35%) 매칭 지원
- 경로당 기능보강: 도비(10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25년) | 2차년도 (2026년) | 3차년도 (2027년) | 4차년도 (2028년) | 5차년도 (2029년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세 입 | 5,787,000 | 5,836,758 | 5,885,790 | 5,934,702 | 5,983,586 | 29,427,836 |
| 경로당 냉·난방비(양곡비) 지원 | 5,787,000 | 5,836,758 | 5,885,790 | 5,934,702 | 5,983,586 | 29,427,836 |
| 경로당 시설개선 | 0 | 0 | 0 | 0 | 0 | 0 |
| 세 출 | 12,443,900 | 12,543,416 | 12,641,450 | 12,739,304 | 12,837,072 | 63,205,142 |
| 경로당 냉·난방비(양곡비) 지원 | 11,574,000 | 11,673,516 | 11,771,550 | 11,869,404 | 11,967,172 | 58,855,642 |
| 경로당 시설개선 | 869,900 | 869,900 | 869,900 | 869,900 | 869,900 | 4,349,500 |
| 재원 조달 | 12,443,900 | 12,543,416 | 12,641,450 | 12,739,304 | 12,837,072 | 63,205,142 |
| 국 비 | 5,787,000 | 5,836,758 | 5,885,790 | 5,934,702 | 5,983,586 | 29,427,836 |
| 도비 | 2,606,001 | 2,620,927 | 2,635,628 | 2,650,311 | 2,664,976 | 13,177,843 |
| 시·군비 | 4,050,899 | 4,085,731 | 4,120,032 | 4,154,291 | 4,188,510 | 20,599,463 |